

인공지능에 관한 미국 감독·작가·배우조합의 단체협약

김 하 닐 (민주노총 서울본부)

2023년 헐리우드 파업의 배경과 주요 이슈

■ 미국 방송영화계 노사관계

- 감독조합, 작가조합, 배우·방송인조합은 명칭이 조합(Guild)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노동관계법을 적용받는 노동조합
- 1912년 작가조합 구성을 시작으로 방송·영상산업의 노동조합 확산과 성장
- 1937년 미연방노동관계위원회로부터 작가노조가 대표교섭노조로 승인됨. 이와 함께 작가를 비롯한 프리랜서 방송·영상산업 종사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 방송사, 프로듀서, 스튜디오 등을 아우르는 전국적인 사용자단체인 영화·TV제작자연합(AMPTP)와 단체교섭을 벌여 3년마다 단체협약을 갱신하고 있음
- 단체협약에 저작권, 노동시간과 안전을 비롯한 노동환경, 임금(보수), 재상영료, 사회보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2023년 헐리우드 파업의 배경과 주요 이슈

■ 기술 발전과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가 불러온 파업

- OTT를 통한 미디어 콘텐츠 이용 증가, 거대 OTT 플랫폼기업의 영향력 증대
 - 방송사, 제작사, 스튜디오 등이 중심이었던 기존 노사관계의 변화
 - OTT 플랫폼기업의 노동조건 후퇴 시도
 - 다양한 플랫폼 간의 경쟁 격화, 비용 효율성 추구 성향 강화
- OTT에 맞춰 각 콘텐츠·프로그램의 제작 기간, 작품당 편수, 편당 길이 등의 변화
 - 고용기간, 노동시간, 프로그램 및 편당 필요한 작업 종류와 노동강도 등 변화
 - ‘재상영’의 개념 변화로 재상영료 지급 기준 정비 필요성 등장
- 생성형 AI의 등장과 콘텐츠 제작 과정의 활용 시도
 - 감독, 작가, 배우의 고용과 생계를 위협

2023년 헐리우드 파업의 배경과 주요 이슈



감독조합의 합의 내용

2023년 미국감독조합 기본협약 및 방송프리랜서협약에 관한
합의각서
(2023년 6월 6일)

MEMORANDUM OF AGREEMENT FOR
DIRECTORS GUILD OF AMERICA BASIC AGREEMENT OF 2023
AND FREELANCE LIVE AND TAPE TELEVISION AGREEMENT OF 2023
(June 6, 2023)

감독조합 합의각서 전문 주요 내용

- 미국감독조합(DGA)와 영화·TV제작자연합(AMPTP) 간에 체결한 합의각서임
- 2020년 기본협약(BA)과 방송프리랜서협약(FLTТА)은 이 합의각서에 따라 변경하고, 이 합의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2023년 협약에 그대로 유지됨
- 2020년 BA나 FLTТА의 내용이 이 합의각서와 충돌하는 경우 합의각서가 우선 적용됨
-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감독조합 합의각서 목차

1. 유효기간
2. 보수
3. 연금과 건강보험
4. 유급육아휴직기금
5. 고예산 SVOD 재상영료
6. 재상영료 통지
7. 고예산 AVOD 프로그램
8. 휴일
9. 고예산 SVOD 장편의 최소 시간
10. 가벼운 제작 전 서비스
11. 유급휴무일
12. 추가 촬영을 위한 대체 감독의 준비일
13. 1시간 유료 TV 시리즈 및 36~65분 1유형 고예산 SVOD 시리즈 추가 촬영일
14. 에피소드 제작자 겸 감독
15. 제작 이후 작업
16. 전자 전송
17. 캐스팅
18. 에피소드 복제
19. 컨설팅 감독
20. 연장근로수당
21. 비드라마 SVOD 프로그램
22. FLTTA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
23. 다양성
24. 감독 안전훈련
25. UPM, 조감독, 공동연출, 무대매니저 안전훈련
26. 안전관리자/위험평가
27. 실탄
28. 지속가능성
29. **생성형 인공지능**
30. 네트워크방송사 용 프로그램의 TV 프로모션 실행
31. 극장 시사회 제한
32. 감독의 개시일 유연성
33. 감독을 위한 시리즈 또는 연재물 사이의 간격
34. 날씨 관련 허가·취소 연락
35. 자격 요건 면제
36. 3개 조합 감사 프로그램
37. 가상 다채널방송사업자에 대한 별도약정서
38. 뉴미디어용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약정서와 뉴미디어를 통해 전송되는 영화에 관한 별도약정서 하의 조사권
39. 법적·행정적 사항들
40. 일몰 조항

감독조합 합의각서 29. 생성형 인공지능

기본협약 및 FLTTA에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는 별도약정서를 추가한다.

2023년 기본협약과 2023년 방송프리랜서협약('FLTTA') 협상에서 양측은 영화 제작에 생성형 인공지능('GAI')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논의했다. **양측은 GAI의 정의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해당 패턴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의 하위 집합(예: ChatGPT4, MidJourney, Dall-E2)을 의미한다는 데 동의했다.** 여기에는 영화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이미 사용되는 것(예: CGI 및 VFX)과 같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전통적인 AI' 기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감독조합 합의각서 29.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자는 제7-101항 및 제7-208항에 기술된 것을 포함하여 감독조합 기본협약에 규정된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나아가, 창작 요소와 관련해 GAI를 활용하기로 하는 사용자의 결정은 기본협약의 조건에 따른 노사간 협의 대상이다.

- 제7조 감독의 최저 노동조건 - 준비, 제작, 후작업
- 제7-101항 : 제7조의 전문에 해당하는 내용
 - 감독은 영화 창작 전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통합한다.
 - 영화 연출은 배정된 감독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다.
- 제7-208항 : 작품 하나에 감독은 한 명
 - 어떤 경우에도 한 작품에 감독은 한 명만 배정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 복수의 스토리나 다국어로 제작된 작품,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TV 시리즈, 외국 법률의 요구에 따른 경우 등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함

감독조합 합의각서 29. 생성형 인공지능

노동자가 GAI를 사용하는 한에서는 사용자의 정책(예: 윤리, 프라이버시, 보안,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용자는 노동자가 GAI를 사용하기 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요구할 권리와 저작권 또는 저작물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GAI 사용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사용자는 협약의 규정들 특히 기본협약 제1-300절 및 제7조, 그리고 FLTTA 제2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DGA 소속 노동자들에게 관행적으로 할당되어온 의무가 기본협약 및 FLTTA를 적용받는 사람에게 할당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GAI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본협약 제1-300절

- 감독, 단위제작관리자(UPM), 제1조감독, 제2조감독, 공동연출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 그 업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할당하지 못하도록 함

기본협약 제7조

- 감독이 수행하는 모든 작업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최저 노동조건을 규정함

FLTTA 제2조

- 감독, 조감독, 무대매니저의 직무와 권한을 규정

감독조합 합의각서 29. 생성형 인공지능

영화 산업과 DGA 소속 노동자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 사용자는 2023 DGA BA 유효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DGA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합의한다. (1) DGA 소속 노동자가 연출한 결과물이 새로운 영화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GAI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논의한다. (2) 반기별로 GAI를 개발하거나 제작에 사용하는 AMPTP의 각 회원사의 임원 1명 이상이 참석해 현행의 또는 계획된 GAI 사용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3) DGA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별 회사 단위로 반기별로 적절한 기밀 유지 협약에 따라 각 회사의 현재 또는 예정된 GAI 사용에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고 논의한다.

양측은 이 별도약정서가 GAI의 활용이 탐색, 실험, 혁신의 과정에 있을 때 협상이 이루어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별도약정서는 양측이 연장에 상호 동의하지 않는 한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작가조합의 합의 내용

2023년 작가조합 극장 및 TV 기본협약에 관한 합의각서

MEMORANDUM OF AGREEMENT FOR THE
2023 WGA THEATRICAL AND TELEVISION BASIC AGREEMENT

작가조합 합의각서 제72조 생성형 인공지능

A. 양측은 **생성형 인공지능('GAI')의 정의**가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그러한 패턴을 기반으로 어문 자료를 포함한 콘텐츠를 생성하며 알고리즘 방법론(예: ChatGPT, Llama, MidJourney, Dall-E)을 사용하는 인공지능의 부분 집합을 의미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여기에는 CGI나 VFX에 사용되거나 운영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과 같은 '전통적인 AI' 기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B. 양측은 전통적인 AI와 GAI가 모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 기본협약 합의각서 (MBA)의 조항 1.B.1.a, 1.B.1.b, 1.C.1.a 및 1.C.1.b에 정의된 ‘작가’ 또는 ‘전문 작가’가 아니며, 따라서 **전통적인 AI나 GAI가 생산한 서면 자료는 본 합의각서 또는 이전의 어떤 합의각서에 의해서도 어문저작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C. 회사가 작가에게 이전에 출판되거나 활용되지 않은 자료로서 GAI가 생산한 서면 자료를 제공하고 어문저작물 집필의 기초로 GAI가 생산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1. 회사는 서면 자료가 GAI에 의해 생산되었음을 해당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
2. GAI가 생산한 서면 자료는 작가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자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3. GAI가 생산한 서면 자료는 저작자 크레딧을 결정하는 목적의 출처 자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4. GAI가 생산한 서면 자료는 별도 권리(Separated Rights, 원본 저작물의 작가에게 부여되는 권리)에 대한 작가의 자격을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작가조합 합의각서 제72조 생성형 인공지능

이 C항은 작가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어문저작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GAI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회사는 이 조문을 회피할 목적으로 GAI가 작성한 자료를 공표하거나 악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작가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어문저작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GAI를 사용하거나 GAI가 생산한 자료를 자신이 쓴 저작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그러한 저작물은 GAI가 '생산한' 자료가 아닌 어문저작물로 간주된다.

작가조합 합의각서 제72조 생성형 인공지능

예시 1:

- 회사가 A 작가에게 GAI가 제작한 시나리오 형태의 어문 자료만을 제공하고 A 작가에게 GAI가 작성한 어문 자료를 각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A에게 협약에 따라 각본에 대한 최저 보수와 부여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최저 추가보수 이상 지급
 - 저작자 크레딧에 대한 권리와 원본 작가에게 주어지는 별도 권리 그대로 적용
- 회사가 나중에 A 작가가 각색한 시나리오를 B 작가에게 주고 이를 다시 각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B에게 협약에 따라 각색에 대한 최소 보수 이상 지급
 - A가 각색한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B의 저작자 크레딧과 별도 권리에 대한 자격 판단

작가조합 합의각서 제72조 생성형 인공지능

예시 2:

- 회사가 A 작가에게 GAI가 제작한 스토리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어문자료만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TV 프로그램의 대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A에게 스토리 및 대본에 대한 최저 보수 이상 지급
 - 저작자 크레딧에 대한 권리와 원본 작가에게 주어지는 별도 권리 그대로 적용
- 회사가 A 작가가 작성한 대본을 B 작가에게 주고 이를 각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B에게 각색에 대한 최소 보수 이상 지급
 - A가 작성한 대본을 고려하여 B의 저작자 크레딧과 별도 권리에 대한 자격 판단

D. 작가는 GAI 사용에 관한 회사의 정책(예: 윤리, 개인정보 보호, 보안, 저작권성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전문작가로부터 어문 저작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 정책이 적용된다. 작가는 GAI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는 GAI 사용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저작물의 저작권성 또는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GAI 사용에 대한 거부권도 포함된다.

작가조합 합의각서 제72조 생성형 인공지능

E. 회사는 작가에게 고용조건으로서 (1.B.1.a와 1.C.1.a. 조항의 정의에 따른) 작가가 썼다면 (1.A.5. 조항의 정의에 따른) ‘어문저작물’이 됐을 수 있는 서면자료를 생성하는 GAI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예: 회사는 작가에게 챗 GPT를 사용해 어문저작물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앞의 문장은 회사가 작가에게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 또는 표절을 감지하는 GAI 프로그램 등 어문저작물을 생성하지 않는 GAI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작가조합 합의각서 제72조 생성형 인공지능

F. 양측은 GAI 사용과 관련된 법적 환경이 불확실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각 당사자는 본 제72조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유보한다. 예를 들어, 본 제72조의 어떤 조항도 16.B. 조항에 따라 유보된 권리를 갖고 있는 작가나 그 작가를 대리하는 작가조합이 GAI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학습, 정보 제공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한 발전을 위해 자신의 어문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그런 권리 내에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달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작가조합 합의각서 제72조 생성형 인공지능

G. 각 회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조합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기밀 유지 약정 하에 반기별 1회 이상 조합과 만나 영화를 발전시키거나 제작할 때 회사의 GAI 사용 및 사용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논의하고 검토하는 데 동의한다. 전술한 조항은 본 제72조의 적용 및 집행에 필요하고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되 이것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는 조합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배우조합의 합의 내용

2020년 제작사-배우·방송인조합 성문화된 기본협약(‘성문화된 기본협약’)과
2020년 배우·방송인조합 텔레비전협약(‘TV협약’)(이하 ‘협약’으로 통칭)을
갱신하기 위한 2023년 잠정합의안 요약문

Summary of 2023 Tentative Successor Agreement to the
2020 Producer-SAG-AFTRA Codified Basic Agreement
(‘Codified Basic Agreement’) and 2020 SAG-AFTRA
Television Agreement (‘Television Agreement’)
(hereafter, collectively ‘the Agreements’)

배우조합 잠정합의안 요약문 제2조 인공지능

A. 발효일 : 아래 조항은 AMPTP(사용자단체)가 비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 부터 적용된다. 단, 제작사는 예외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계약 기간의 첫날, 즉 2023년 11월 9일부터 이러한 조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B. 연기자의 디지털 복제 및 변경

1. 연기자의 "디지털 복제본(Replica, 원작자가 손수 만든 복제본을 말함 /역주)"
제작·사용·변경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대상 설정

a) 두 가지 유형의 디지털 복제본 제작 및 사용: '고용 기반 디지털 복제본'과
'독립 제작 디지털 복제본'

2. 고용 기반 디지털 복제본: (i) 본 협약을 적용받는 영화를 위한 고용과 관련, (ii) 디지털 기술 이용, (iii) 연기가 실제로 참여하고, (iv) 연기가 실제 연기하지 않은 촬영본 또는 사운드트랙에 연기를 표현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

a) 고용 기반 디지털 복제본 제작 노동

(1) 작업 48시간 전에 사전 통지.

(2) 동의는 (a) 명확하고 명시적일 것 (b) 개별 연기자 서명한 서면에 배서 또는 진술로 의사표시. (c) 연기하는 날 복제본 제작하면 제작시간을 노동시간에 포함

(3) 별도로 작업 일정을 잡으면 (a) 연기자 최저 임금 이상 지급, (b) 연기자의 요청으로 잡힌 일정이면 4시간 이내는 일할 급여의 절반(1/2)을, 4시간을 초과하면 일할 급여 지급, (c) 연속 근로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d) (i) 급여 기준이 높은 배우, (ii) 연기와 미리 약속된 기간 내의 작업, (iii) 제작자가 다른 명목으로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 날 이루어진 작업에는 추가 보수 없음

b) 고용 기반 디지털 복제본 사용

(1) 해당 연극자가 출연한 영화에서 사용하는 경우

(a) 화면이나 소리가 대본, 연기 및 녹화 상태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동의가 필요하다.

(b) 사용 목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c) 동의는 분명하고 명시적이어야 하며, 연극자 개개인의 서명이나 이름의 약자(약식 서명)가 포함된 고용계약서나 연극자 별로 서명해 작성한 서면에 배서 또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

(d) 연극자의 생전에 이루어진 동의는 명시적으로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 사망 후에도 효력이 지속된다.

(i) 연극자가 사망하였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 사망한 연극자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조합이 동의를 행사할 수 있다.

(e) 보상

(i) 제작자가 판단하기에 해당 장면을 연기자가 직접 연기했다면 해당 연기를 하는 데 걸렸을 제작일수에 대한 일할 급여와 일할 계산한 최저급여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제작자는 이때의 제작일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활용하여 신의성실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ii) 보상은 모든 목적에서 임금으로 취급된다.

(iii) (a) 연기자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에 해당 보수가 포함되는 경우, (b) 연기자가 직접 출연한 장면에 디지털 복제본이 사용된 경우, (c) 연기자가 별표 F에 속하는 경우(높은 출연료를 받는 경우)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음

(f) 연기자가 재상영료를 지급받을 자격을 갖는 형태로 디지털 복제본이 영화에 유지되는 경우 재상영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i)과 (ii)에 연기자의 참여 형태와 시간에 따라 재상영료 산정 기준 명시

(2) 해당 연기가 출연한 영화 외에 사용하는 경우

(a) 동의 및 별도 교섭 : (i) 동의는 분명하고 명시적일 것, (ii) 사용 목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할 것, (iii) 최초 고용 시점이 아닌 사용 시점에 동의받을 것
단, 이미 확인된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최초 고용 시점에 동의를 받아도 됨

(a) 확인된 프로젝트 각각의 사용 목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는 경우, (b) 연기가 확인된 다른 프로젝트에도 고용되어 있거나 확인된 다른 프로젝트가 제작을 시작할 시점에 사망한 경우

(c) 명시적으로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 동의의 효력은 사망 후에도 지속된다.(d) 연기가 사망한 후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한 연기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조합이 동의를 행사할 수 있다.

(b) 보상

- (i) 연기자 일급(재상영료 지급 대상인 경우 이를 포함)은 최저급여이다.
- (ii) 최저보수 및 재상영료 이상으로 교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배우조합의 다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현장 또는 매체에서 사용해야 한다.
- (iii) 연기자가 별표 F에 따라 고용된 경우 사용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

3. 독립 제작 디지털 복제본: (i) 애셋(asset,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것이나 능력 또는 아직 소비되지 않은 용역잠재력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영어 발음 그대로 표기함 /역주)이 인간 연기자의 것과 같은 목소리 및/또는 외모를 가진 인간 연기자로 보이도록 하는 의도를 갖고 만들어져 실제로 명백히 그런 인상을 주고, (ii) 인간 연기자 자신이 아닌 캐릭터의 역할을 연기하며, (iii) 독립 제작 디지털 복제본이 사용될 영화에서 애셋이 묘사하는 역할의 인간 연기자와의 고용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 사용 전에 동의 및 교섭 필요, b) 동의는 분명하고 명시적일 것, c) 사용 목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된 서면에 연기자가 서명해야 함, d) 명시적으로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 사망 후에도 효력 유지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조합이 동의 행사), f) 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급할 것, g)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허용

4. 디지털 변경

- a) 촬영본이나 사운드트랙에서 배우의 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배우의 동의 필요, b) 대본, 연기 및 녹화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예외, c) 동의는 분명하고 명시적이어야 하며, 연기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에 배서 또는 진술 필요, d) 변경 목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 포함할 것, e) 명시적으로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 사망 후에도 효력 지속(대리인 또는 조합이 권한 행사)
- f) 동의의 예외: (1) 영화 품질 향상을 위한 후작업 과정의 변경, 편집, 배열, 재배열, 수정 또는 조작, (2) <기본협약 및 텔레비전협약>의 규정에 따라 더빙이나 대역 사용이 허용되는 상황, (3) 출연자 입술, 얼굴, 목소리, 움직임을 외국어로 조정하거나 특정 시장의 라이선스 또는 판매를 위한 변경 목적인 경우
- g)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중재에 회부하고, h) 구제 조치는 금전적 손해로 제한된다.

5. 단체협약 또는 TV협약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a) 일반규정 제43절(누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 생성형 인공지능 (GAI)

1.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방어적인 정의를 수립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하여 생성된 "모조 연기자"의 사용 조건을 설정한다.
 - a) '모조 연기자'는 디지털로 생성된 애셋으로서 (1) 해당 애셋이 어떠한 특정 인간 연기자로도 인식되지 않는 인간 연기자라는 인상을 줄 목적으로 생성되고 실제로 명백히 그런 인상을 주며, (2)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고, (3) 디지털 복제본도 아니다. 또한 (4) 영화를 위해 애셋이 묘사한 역할의 인간 연기자와의 고용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배우조합 잠정합의안 요약문 제2조 인공지능

- (1) 영화에서 인간 연기의 중요성과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인정한다.
- (2) 연기자를 대신해 모조 연기자를 사용하는 경우, 조합에 통지하고 적절한 대가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교섭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a) 이 조건은 비인간 캐릭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b)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중재 가능하며 금전적 손해로 제한된다.
- (3) 제작자가 식별가능한 특정 인간 연기자의 이름과 얼굴 특징을 GAI 시스템에 지시해 특정 인간 연기자로 인식될 수 있는 주요 얼굴 특징(예: 눈, 코, 귀 또는 입)을 가진 모조 연기자를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연기자들과 교섭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 모조 연기자를 생성할 목적으로 GAI 시스템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보상(있는 경우)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데 합의한다.

D. 영화를 발전시키거나 제작할 때 GAI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조합과 각각의 제작사 간에 (비밀유지약정에 따라) 반기별로 협의를 갖고, 여기에는 GAI 사용이 편향성을 완화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

E. 엑스트라(단역배우)의 디지털 복제 및 변경

1. 디지털 복제 및 변경

a) 엑스트라의 디지털 복제본 생성, 사용 또는 변경에 적용된다.

b) '엑스트라 디지털 복제본'은 엑스트라의 목소리나 외모를 복제한 것으로서 엑스트라가 실제로 참여하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생성되고 엑스트라가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 장면에서 엑스트라를 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본을 말한다.

(1) 엑스트라의 '타일링(영상 제작 기법의 하나)'에는 적용되지 않음, (2) <기본 협약 및 텔레비전협약>에 따른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함, (3) 엑스트라를 늘리기 위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협약의 별표에 명기된 사항은 무효가 되지 않음

배우조합 잠정합의안 요약문 제2조 인공지능

- c) 엑스트라의 디지털 복제본 제작은 다음과 같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1) 제작 48시간 전에 사전 통지하고,
 - (2) (a) 분명하고 명시적일 것
 - (b) 엑스트라 개개인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 상의 배서나 진술을 통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함
 - (c) 제작사를 위한 다른 작업과 같은 날 일정을 잡도록 노력하고, 소요 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됨
 - (d) 보상은 (i) 같은 날 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1일 급여를 지급하고, (ii) 제작사가 다른 용역, 출장비, 또는 야간 로케이션에서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수당 또는 취소된 호출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하지 않음 (하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하루분과 동일한 액수로 맞춰서 지급).

2. 엑스트라 디지털 복제본 사용

a) 엑스트라가 출연한 영화에서 사용

- (1) 대본, 출연 및 녹화 상태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한 동의 필요
- (2) 사용 목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 포함할 것
- (3) 동의는 분명하고 명시적이어야 하며, 엑스트라 개인의 서명이 포함된 고용계약서, 바우처, 서면에 배서하거나 진술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것
- (4)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사망 후에도 효력 유지(대리인이나 조합이 행사)
- (5) 주요 배역으로 사용하려면 엑스트라가 실제 연기할 경우 소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제작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것
 - (a) 제작일수 산정은 객관적 기준을 이용해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할 것
 - (b) 디지털 복제본이 주여 배역으로 영상에 남는 경우 재상영료 지급할 것
 - (c) 보상은 모든 목적에서 임금으로 취급

b) 엑스트라가 출연한 영화 외의 사용

(1) 동의 및 별도 교섭 : (a) 분명하고 명시적일 것, (b) 사용 목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될 것, (c) 최초 고용 시점이 아닌 사용 시점에 동의가 이루어질 것, (d) 동의의 효력은 사망 후에도 지속(대리인 또는 조합이 동의 행사)

(2) 보상 :

(a) 엑스트라 최저 임금 이상 지급해야 한다.

(b) 최저 임금 및 재상영료 이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배우조합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현장 또는 매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3) 엑스트라를 고용해 적용 가능한 보상 최대치를 채우지 않고 디지털 복제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엑스트라 디지털 복제본을 해당 엑스트라의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디지털 변경

- a) 촬영본 또는 사운드 트랙에서 엑스트라의 모습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동의 필요
- b) 대본, 연기 및 녹화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예외
- c) 동의는 분명하고 명시적일 것, 변경 목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 포함할 것
- d) 엑스트라의 서명이 포함된 고용계약서, 바우처, 서면 상의 배서 또는 진술로 할 것
- e) 명시적으로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 사망 후에도 효력 지속 (대리인 또는 조합이 행사)
- f) 엑스트라가 대사를 말하거나 및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입술 또는 얼굴 움직임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별표 A 26절에 따른 업그레이드 필요
- g) 영상 품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협약에 따라 더빙이나 대역 사용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후작업 중 이루어지는 변경, 편집, 배열, 재배열, 수정 또는 조작에 대한 동의는 불필요
- h) 이의 제기는 중재에 회부되고, 구제 조치는 금전적 손해로 제한됨